

제 290회 임시회
2010. 6. 18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교육사회위원회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0. 6. 18(금)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5월 25일
- 회부일자 : 2010년 6월 1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2010. 6. 8, 제29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연희지 기획관리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(안 제2조)
 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⇒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7명
 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2,905명 ⇒ 2,911명

-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(안 제4조)
 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

-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(안 부칙)
 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

- 다른 조례의 개정(안 부칙)
 -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(13명⇒7명)

3. 검토보고 요지

(교육사회전문위원 윤양한)

□ 본 조례안은

-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조직 명칭과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□ 주요내용은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18명으로 변함이 없으며,
 - 정원관리 단위기관 명칭과 정원을 종전의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7명으로 변경 및 명시하고,
 -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을 2,905명에서 2,911명으로 6명 증원하였음.
- 또한, 정원관리 단위기관에 충청북도의회 사무처를 추가 명시하였고,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로 2010년 8월 31일 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, 이 조례 개정에 따라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」의 정수를 13명에서 7명으로 변경한 것으로,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안 제2조제1호의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7명과,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 7명의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00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. 5. 25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2010. 7. 1. 설치되는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필요한 명칭과 정원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에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정하고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을 변경(안 제2조)

1) 정원관리 단위기관명칭 변경 및 정원의 총수를 정함(안 제2조제1호)

교육위원회 의사국 ⇒ 『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: 7명

2)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소속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
- 2,905명 ⇒ 2,911명(안 제2조제2호)

나. 정원관리의 단위기관 추가(안 제4조)

- 충청북도의회 사무처

다.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

-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(7명)이 따로 있는 것으로 간주

라. 다른 조례의 개정

- 「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

관한 조례」 개정(13명⇒7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과 같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충청북도의회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붙임
2) 입법예고(2010.3.29.~4.19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규제심사,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4) 부패영향평가, 평가결과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북도의회 사무처 (이하 “충청북도의회 사무처”라 한다) : 7명

제2조제2호 중 “2,905명”을 “2,911명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충청북도의회 사무처, 본청,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에 따른 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은 2010년 8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13명”을 “7명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2,918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.....</p>
<p>1. <u>교육위원회 의사국</u> : <u>별도 조례로 정한다.</u></p>	<p>1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제1항에 따른 <u>충청북도의 회 사무처(이하 “충청북도의 회 사무처”라 한다)</u> : <u>7명</u></p>
<p>2. 본청, 지역교육청, 직속기관,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: <u>2,905명</u></p>	<p>2. : <u>2,911명</u></p>
<p>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지역교육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4조(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·직급별 정원) <u>충청북도의회 사무처</u>,</p>